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5년 3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 박병기 사무관(044-203-5172)

올해부턴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실시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계획 공고

□ **올해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이 **아파트(공동주택)로 확대**하고, 사업규모도 작년 2,000가구 규모에서 **올해는 5,000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신산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대여사업을 확대**한다.

○ 올해는 **설치용량도 전기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 대여사업 확산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을 3.11일(수) 공고**했다. (다음 상세내용 참조)

태양광 대여사업 개요

□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

○ 주택소유자 :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

○ 대여사업자 :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 본 사업이 착수된 '14년도에는 단독주택 2,006가구에 설치를 완료

□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4년	'15년
대상가구	**단독주택** * 월 350kWh 이상 사용가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 * 월 350kWh 이상 사용가구
사업규모	**2,006가구** (6MW)	**5,000가구** (10.5MW)
설치용량	3kW고정	· 단독주택: 3kW~9kW · 공동주택: 10kW~30kW
대여료 상한액	7만원/月	· 단독주택(7만원/月) * 단, 소비전력 600kWh이상 주택의 경우 4kW 설치시(12.8만원)~9kW 설치시(34만원) · 공동주택 - 10kW~30kW(4,500원~7,600원/月)

□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3월중 '15년도 대여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3. 12. 부터 3. 20. 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nrbpm.kemco.or.kr)에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전화 031-260-4671, 4675)

□ 지난해부터 **에너지신산업으로 본격 추진**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간 정부의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해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 보조사업을 통해 5,000가구 태양광 보급 시 약 126억원의 예산 소요

○ 작년에는 **2,006가구**가 **참여**, 총 **7.2GWh의 태양광발전**을 통해 **약 226백 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4년 가구당 평균 전기료 절감효과는 연간 약 11.3만원 수준

○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만5천가구에 태양광 설비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과를 보아가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태양광 대여사업 확산계획(가구) : ('14) 2,006 → ('15) 5,000 → ('16) 7,500 → ('17) 10,000

□ 한편,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작년에 본격 시작된 태양광 대여사업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에너지신산업으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 더불어 "**올해는 사업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

< 첨부 > '15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박병기 사무관(☎ 044-203-51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5년도 태양광대여사업 지원공고(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 호

"20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 3.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도 태양광대여사업 지원공고

1. 사업개요

가. 태양광 대여사업

○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 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나.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규모: 5,000가구 (10.5 MW) 보급

※사업규모는 사업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단독주택(3kW 기준)

구분	사 업 기 간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REP), (VAT 불포함)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년 (최초 REP발급 후)	213원/kWh	70,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음	38,000원

- 단독주택(3kW이상 기준, 월평균 600kWh 이상 사용가구 대상)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설치용량	4kW	5kW	6kW	7kW	8kW	9kW
기본	월간대여료상한액 (최초 REP발급 후)	128,000	168,000	206,000	260,000	300,000	340,000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54,000	54,000	54,000	73,000	73,000	73,000

* REP는 3kW만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kW당 평균발전량만 인정함

- 공동주택

구분	사 업 기 간	소비자 형태		월간대여료상한액 (VAT 포함)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REP), (VAT 불포함)
		최대설치용량	동당 가구수		
기본	7년 (최초 REP 발급 후)	10kW	30미만	7,600원	213원/kWh
			31~40	5,600원	
			41~50	4,500원	
		20kW	51~60	7,600원	
			61~70	6,400원	
			71~80	5,600원	
		30kW	81~90	7,600원	
			81~100	6,900원	
			101이상	6,3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10kW	30미만	2,100원	없음
			31~40	1,600원	
			41~50	1,300원	
		20kW	51~60	1,800원	
			61~70	1,600원	
			71~80	1,400원	
		30kW	81~90	1,500원	
			81~100	1,300원	
			101이상	1,200원	

* "기본" 사업기간에는 대여사업자가 A/S 등 사후관리를 수행한 경우에만 REP를 지급하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의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연장"사업기간의 대여료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치완료기간(사업종료기간) : 2015년 10월 30일

다. 참여자격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으로 월평균 350kWh 이상 사용가구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1가구당 3kW 개별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1]에서 규정한「공동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 명의로 신청

3.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신규주택(전력사용 실적 전무)의 경우 모두 신청 가능

4. 설치주택의 전기 용도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5. 단독주택의 경우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 사용가구, 단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제외

라. 사업진행절차

구 분	진행업무	비 고
소비자와 태양광 대여사업자 협의	- 설치대상에 따른 검토 (계통연계 기준) *단독주택인 경우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단독주택: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 · 공동주택 : 입주자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로 함
 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 체결	·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설비 설치	- 인증제품 사용 의무	·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사용전 검사	-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 공사에 사용전검사 요청	· 사용전점검 검사 확인증으로 대상설비 설치 확인 (인증제품, 설치용량 등)
 소비자	-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 전기료 절감 편익효과 · 사후관리 보장 받음
 설치 유지 및 보수	- 약정기간 전 기간에 걸쳐 대여사업자가 유지관리	· 7년에 걸쳐서 대여 사업자는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A/S 및 부품교환의 책임이 있음

○ 주의사항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등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니, 대여사업자와 신청자는 사업공고,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함

- 태양광 설비의 설치확인일 이후부터 7년 동안은 대여료 상한액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여료는 대여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여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에 상응하는 실질적 혜택(예 : 대여료 인하, A/S 강화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약정기간의 종료 후 "소비자"에게 이전하여야 함

- 장소제공자(주택소유자)가 기본약정기간 완료 이후 계약 연장을 원할 시에는 대여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장 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지원내용 이내(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함

- 단독주택으로 설치되는 대여사업 발전설비의 설치량은 최대 9kW내외로 설치가 가능하며 단, 월평균 전기사용량 600kWh이상 사용하는 가구만 해당됨. 단, 지급되는 REP는 3kW에 한함

 ※발전량의 인정방법은 총 발전량을 kW당 평균발전량만 인정함

-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 REP발급 요건

- 매분기별로 나누어 발급
- 해당연도 최초 설치확인 후 계량기의 수치는 0으로 계산함
- REP 발급대상은 매분기 당해 마지막월 중순까지의 발전량을 익월 5일까지 센터로 제출하여야함
 · 발전량신고서 및 대상가구 목록(excel, 발전량데이터포함) 제출

관리번호	성명	설치장소	누적발전량	당분기 발전량	비 고
		시 구 읍면동까지			

※ REP발급을 위한 발전량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최초 발전량 신청시 선택된 방법은 협약기간 내에는 변경할 수 없음

① 공인계량기 부착가구: 발전량을 포함한 목록 제출
② 공인계량기 미부착 가구 : 발급대상 목록 제출

※관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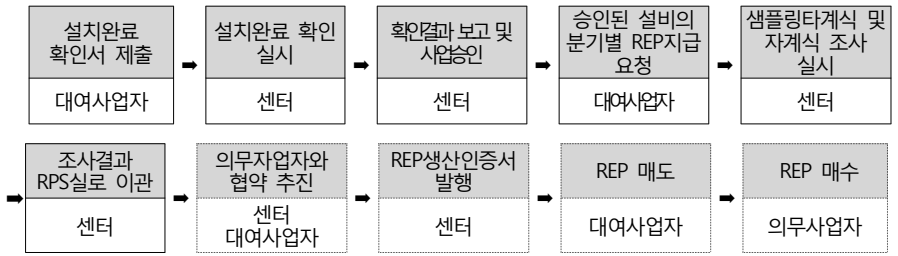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한 지침 제5조
"**공인계량기를 설치**하고 실제 발전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제 발전량에 대해 생산인증서를 발급할수있다〃

* 제출된 목록의 설치현장 중 일부를 센터에서 샘플링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동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발전량이 평균이용률 1000분의 138에 미달할 경우 실제발전량을 적용하여 REP 발급

- 생산인증서의 발급은 분기단위로 하며, 발급 신청월 또는 분기별 발전량에 대해 분할하여 발급하지 않음

○ REP 발급 절차



2.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계획

가. 신청요건

○ 대여사업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인증모듈제조업체는 단독 신청 가능

○ 제주지역의 A/S협력업체 구성시 가점적용

○ 참여분야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혼재하여 지원 가능하며 공동주택 참여율에 따라 가점적용

※유의사항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② 대여사업 신청시 컨소시엄 대표를 대여사업자로 인정

③ 보험관련사항

-기본 사업기간(설치 확인후 7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부품교체 포함) 체계, 자연재해, 제3자 피해 등(대여사업자의 부도, 파산에 따른 피해보상 포함)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0조 2항에 의한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 이에 준하는 증서를 대여사업자 협약 또는 최초 REP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④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확보물량의 70%미만으로 미달한 경우 및 사업기간 이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대여사업에 참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설치의 변경사항 발생(이전또는 변경 등)시 변경후 15일이내 신고하여야함

⑥ 대여사업자 선정통보일 이후 및 사업기간내의 사용전 점검필증을 득한 설비만 '15년 대여사업으로 인정함

나. 대여사업자 선정절차

공고	⇒	참여서제출	⇒	평가	⇒	선정
(산업부)		(대여사업자)		(센터)		(센터)

3.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방법

가. 평가기준 및 배점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 가 기 준</th><th>배 점</th></tr>
<tr><td rowspan="2">A/S우수성 및
고객만족도</td><td>○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①A/S 사후관리종합체계(표준메뉴얼)의 적정성
②설치지역의 A/S협력업체 구성 및 운영계획
(참고2 세부내용 참조)
<table><tr><td>배점</td><td>10점</td><td>7점</td><td>5점</td></tr><tr><td>지역수</td><td>13개 지역</td><td>10개 지역</td><td>7개 지역이하</td></tr></table>* 제주지역 포함시 가점(2점)</td><td rowspan="2">42</td></tr>
<tr><td>○고객만족 수준
④A/S 고객전담센터 운영계획
⑤발전량보증제 실시계획</td></tr>
<tr><td>사업운영능력</td><td>○재원조달의 안정성('14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태양광시스템(대여사업포함) 시공실적
⑥설치용량('10년 이후, 참고1 세부기준 참조)
*<평가> 3MW이상(10점), 1~3MW(7점), 1MW이하(5점)
○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계획
○대여사업 참여경력 가점(5점)
○공동주택 참여율 가점(3점)</td><td>38</td></tr>
<tr><td>경영상태</td><td>○신용평가등급1)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table><tr><th>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기준</th><th>배점</th></tr><tr><td>AAA, AA+, AA0, AA-,A+, A0, A-</td><td>20</td></tr><tr><td>BBB+, BBB0, BBB-,</td><td>12</td></tr><tr><td>BB+ 이하</td><td>0</td></tr></table></td><td>20</td></tr>
<tr><td colspan="2">계</td><td>100</td></tr>
</table>

※ 평가 방법(비계량지표)

- 'A/S 우수성' 부문은 세부평가기준(①~⑤)별로 우수(20%), 보통(50%), 미흡(30%)의 3단계로 상대평가하며, 각 배점은 10, 7, 5점임
- '사업운영능력' 부문은 평가기준별로 우수(20%), 보통(50%), 미흡(30%)의 3단계로 상대평가하며, 각 배점은 10, 7, 5점임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미제출시 또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포함)에는 0점 처리 함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2014.02월 현재)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구-디앤비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등

3) 대여사업자 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등 가장 높은 회사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며, 대여사업자가 아닌 업체의 신용평가등급관련 서류로 제출할 경우 제출회사의 연대 보증서(첨부8예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참고1]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⑥ 설치용량

분 류(kW)	배점
3,000 초과	10
1,000~3,000	7
1,000미만	5

※ 설치용량 배점

1. 설치용량 배점은 참여제안에 포함된 컨소시업 업체의 모든 설치용량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설치용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설치용량을 확인할수 있는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설치용량 미표기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실적 인정기간 : 2010년 1월1일~ 공고일까지)

3.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5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설치용량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하여 정함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증빙자료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날짜,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함)
 -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5.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량확인을 위한 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용량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참고 2] 전국 지자체 현황

시 · 도	광역자치단체 (총 17개)	기초자치단체 (총 22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장 : 박원순)	(총 25개)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6대 광역시	부산광역시청 (부산시장 : 허남식)	(총 16개) 강서구청, 금정구청, 남구청, 동구청, 동래구청 부산진구청, 북구청, 사상구청, 사하구청 서구청, 수영구청, 연제구청, 영도구청, 중구청 해운대구청, 기장군청
	대구광역시청 (대구시장 : 김범일)	(총 8개) 남구청, 달서구청, 동구청, 북구청 서구청, 수성구청, 중구청, 달성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시장 : 송영길)	(총 10개) 계양구청, 남구청, 남동구청, 동구청 부평구청, 서구청, 연수구청 중구청, 강화군청, 옹진군청
	광주광역시청 (광주시장 : 강운태)	(총 5개) 광산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서구청
	대전광역시청 (대전시장 : 염홍철)	(총 5개) 대덕구청, 동구청, 서구청, 유성구청, 중구청
	울산광역시청 (울산시장 : 박맹우)	(총 5개)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중구청, 울주군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 김문수)	(총 31개) 고양시청, 과천시청, 광명시청, 구리시청, 군포시청 김포시청, 남양주시청, 동두천시청, 성남시청, 수원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성시청, 안양시청, 양주시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왕시청, 의정부시청, 이천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하남시청, 화성시청 가평군청, 양평군청, 여주군청, 연천군청
강원도	강원도청 (강원도지사 : 최문순)	(총 18개) 강릉시청, 동해시청, 삼척시청, 속초시청, 춘천시청 태백시청, 고성군청, 양구군청, 영월군청, 인제군청 정선군청, 철원군청, 평창군청, 홍천군청 화천군청, 횡성군청
충청도	충청북도청 (충북도지사 : 이시종)	(총 12개) 제천시청, 청주시청, 충주시청, 괴산군청, 단양군청 보은군청, 영동군청, 옥천군청, 음성군청
	충청남도청 (충남도지사 : 안희정)	(총 15개) 공주시청, 계룡시청, 논산시청, 보령시청, 서산시청 아산시청, 천안시청, 금산군청, 당진시청, 부여군청 서천군청, 예산군청, 천양군청, 태안군청, 홍성군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장 : 류한식)	
전라도	전라북도청 (전북도지사 : 김완주)	(총 14개) 군산시청, 김제시청, 남원시청, 익산시청, 전주시청 정읍시청, 고창군청, 무주군청, 부안군청, 순창군청 완주군청, 임신군청, 장수군청, 진안군청
	전라남도청 (전남도지사 : 박준영)	(총 22개) 광양시청, 나주시청, 목포시청, 순천시청, 여수시청 강진군청, 고흥군청, 곡성군청, 구례군청, 담양군청 무안군청, 보성군청, 신안군청, 영광군청, 영암군청 완도군청, 장성군청, 장흥군청, 진도군청 함평군청, 해남군청, 화순군청
경상도	경상북도청 (경북도지사 : 김관용)	(총 23개) 경산시청, 경주시청, 구미시청, 김천시청, 문경시청 상주시청, 안동시청, 영주시청, 영천시청, 포항시청 고령군청, 군위군청, 봉화군청, 성주군청, 영덕군청 영양군청, 예천군청, 울릉군청, 울진군청, 의성군청 청도군청, 청송군청, 칠곡군청
	경상남도청 (경남도지사 : 홍준표)	(총 18개) 거제시청, 김해시청, 밀양시청, 사천시청, 양산시청 진주시청, 창원시청, 통영시청, 거창군청, 고성군청 남해군청, 산청군청, 의령군청, 창녕군청, 하동군청 함안군청, 함양군청, 합천군청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우근민)	

나. 선정방법

○ 대여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센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70점 이상 기업중 사업규모 내에서 취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다. 사업 수행시 준수사항

○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 사용

○ 기본 사업기간(설치 확인후 7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부품교체 포함) 체계, 자연재해, 제3자 피해 등(대여사업자의 부도, 파산에 따른 피해 보상 포함)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0조 2항에 의한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 이에 준하는 증서를 대여사업자 협약 또는 최초 REP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태양광설치물의 이전 및 판매는 변경전·후의 소비자동의서 제출시 가능

○ 대여사업자는 년 1회 소비자 관리현황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비자 변경시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청서[첨부4]를 변경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함

* 이전 등에 의하여 설치현장과 소비자명이 상이할시 REP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대여사업와 소비자의 계약은 [첨부3] 표준계약서(예시)를 참조하여 쌍방합의 하에 계약하여야 함

○ 기존설비(보급사업/자가설치)는 대여사업으로 전환 불가

○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설비는 기본약정기간동안 대여사업자 소유이며 소유주 변경 불가

* 소유주체 변경시 REP발급 불가

○ 대여사업자가 상한선 이상의 대여료를 소비자에게 수취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 자격 취소

○ '15년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완료된 가구수의 인정은 선정된 대여사업자가 최종 제출한 설치완료확인서[첨부 5] 및 목록에 의하며 완료 설비에 대해 실태조사시 설치기준 미준수 등의 설치대상 적발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완료물량 및 REP발급에서 제외하며, 대여사업자의 자격 취소

○ 대여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대여사업자와 주택소유주간의 계약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주택소유주가 타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및 기간 등

○ 문 의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보급실(260-4675, 67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 접수기간 : '15. 3. 12.(목) ~ '15. 3. 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http://nrbpm.kemco.or.kr 접수

* 신청방법은 첨부8 참조

○ 태양광대여사업 컨소시엄업체는 요약본 설명자료를 맨 앞장에 첨부한 참여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각 10부씩 평가당일 별도 제출 (A4용지 좌철제본 20페이지 이내, 지정된 양식 첨부 2 참조)

* 평가를 위해 ppt자료를 15페이지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필수사항

○ 대여자업자의 **요약본 설명자료** 전면에 별도 첨부할 사항
· (수익성)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 (안정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비율

4. 기타사항

○ 설치 완료된 태양광 대여사업 발전설비는 명판(별첨7)를 반드시 부착

○ 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사전 확보 물량의 70% 미만으로 미달한 경우 및 사업기간 이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대여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여사업자가 [첨부 2]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및 대여료 상한선 이상 수취시 확인시점부터 대여사업자격 박탈

○ 명의 변경된 소비자가 동 설비 사용 의향이 있을 경우 기존조건으로 승계가능(단,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에 따름)

○ 대여사업자 모집관련 제출된 정보는 태양광 대여사업 수요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

○ 공고내용 숙지미숙, 입력(기록)오류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신청서로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여사업자가 아닌 업체의 신용평가등급관련 서류로 제출할 경우 대여사업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 부여

○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4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발급 및 거래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2604-675, 679)

[첨부] 1.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제안서 1부
2. 대여사업자에 대한 위반사항 기준 1부
3. 표준계약서(예시) 1부.
4.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청서 1부
5. 폐기·중지 신고서 1부.
6. 설치확인 보고서 1부.
7. 태양광 대여사업 발전설비 명판 1부.
8. 연대보증서(예시) 1부.
9. BPM을 통한 태양광대여사업 신청방법 안내 1부.

[첨부 1]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

*대여사업자 법인명		*참여분야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 소	우편번호()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자 본 금		부채비율	
*사업물량	태양광 MW	*예상 대여료(월)	(kW/천원)
*기업신용평가등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모듈제조업체 법인명		*시공업체 컨소시엄 업체수	업체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위와 같이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여사업자명 (인)

모듈제조업체명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 대여사업자 사업계획서 1부
2. 대여사업자 및 컨소시엄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여사업자)
4. 기업회계감사 보고서 1부 (대여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업체)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대여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업체)
 *연대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서 1부 제출
6. 사전약정물량 목록(양식#1참조) 1부
7. 대여사업 계약서 1부(업체별 양식에 의함)

*은 필수등록항목입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자 사업계획서

1. 대여사업자명 :
2. 모듈제조업체명 :
3. 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①A/S 사후관리종합체계(표준메뉴얼)의 적정성
 ②설치지역의 A/S협력업체 구성 및 운영계획

 * 각 컨소시업별 지역을 기준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A/S 구성요소 및 구성업체의 관리방법 및 계획

- 고객만족 수준
 ③A/S 고객전담센터 운영계획
 ④발전량보증제 실시계획

4.사업운영능력
- 재원조달의 안정성('14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으로 요약내용 위주로 기재)
- 태양광시스템(대여사업포함) 시공실적
 ⑤설치용량(최근 5년 기준)
- 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계획(미달시 추진방법 포함)
 *확보목표는 참여제안서에는 물량건수 및 총발전량만 한줄로 기재하고, 관련목록은 양식#1에 참여제안서 뒷장에 첨부로 제출
- 대여사업 참여 경력
- 공동주택대상 추진 방법 및 물량확보 방안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스캔하여 첨부)
6. 설비대여료 : 월간 대여료 및 산출내역, 대여료 운영방법 등

위와 같이 20 년 태양광대여사업자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여사업자명 : (인)

모듈제조업체명 : (인)

양식#1)사전약정 물량 작성 양식

(단위: 건, KW)

번호	성명	설치장소		확정물량				비 고
		시.도구분	세부주소	주택	용량	공동	용량	
		경기, 서울 등 (두자로 기입)	시 구 읍면동까지					

※등기등본 및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첨부 2] 대여사업자 관련 위반사항

내 용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수령한 경우
3.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인버터, 모듈)
4. 송전계량기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및 설치현장이 공단에 제출된 사실과 다른 경우
5. 제시된 대여료보다 상한선 이상 수취 및 대여료 미납 대상에게 대여료를 수취한 경우
6. 대여사업자 협약시 전반부 7년에 대한 보험 증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을 제출 및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보증서 등 미제출의 경우
7. 센터소장의 설비 가동상태·생산량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자신이 설치한 설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9. 센터소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첨부 3] 표준계약서(예시)

태양광발전설비 대여 표준 계약서

NO : 회사별자체구분 - 연도 - 회사별 일련번호

<table>
<tr><td rowspan="6">계약당사자</td><td rowspan="3">갑</td><td rowspan="3">대여
이용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연 락 처</td><td></td><td>FAX 혹은 이메일</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을</td><td rowspan="3">대여
사업자</td><td>대 표 자</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연 락 처</td><td></td><td>FAX 혹은 이메일</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계약내용</td><td colspan="2">설치용량</td><td>kWp</td><td>모듈</td><td>___Wp × _장</td><td>인버터</td><td>_____kW</td></tr>
<tr><td colspan="2">설치사업비</td><td colspan="2"></td><td>월 대여료</td><td colspan="2">일금 ₩ /월 × 개월</td></tr>
<tr><td colspan="2">설치장소(주소)</td><td colspan="2"></td><td>설치기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대여기간</td><td colspan="6">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전점검 승인일로부터 7년 (후반 8년은 자율적 운영)</td></tr>
<tr><td colspan="2">입금계좌</td><td colspan="2">은행 계좌번호</td><td colspan="2"></td><td>예금주</td><td></td></tr>
<tr><td>본문조항</td><td colspan="7">※ 다음 페이지의 본문조항 참조</td></tr>
<tr><td>특약조항</td><td colspan="7">제1조 (지체상금)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한내에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제2조 (상계거래 시설 부담금) 한국전력의 상계거래 시설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td></tr>
<tr><td></td><td colspan="7">년 월 일

[갑] [대여이용자] [인]

[을] [대여사업자] [직인]</td></tr>
</table>

□ 본문조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태양광발전설비의 대여이용자(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대여사업자(이하, "을"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태양광발전설비 대여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료 등의 지급)

① "갑"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대가로 약정한 월 대여료를 매월 10일에 "을" 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초기 대여료를 포함한 대여료 및 비용 등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을" 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만일"갑"이 상기 기재 이외의 방식으로 입금한 경우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사업의 준공)

① "을"은 약정한 설치기한 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설치기한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준설치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추가공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보관과 사용방법)

①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정부보조 사업과의 차별을 위해 "을"은 "갑"이 육안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위치에 "갑"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설비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사로 인해 이전할 경우 이전 및 이전비용은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의 지시 및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형상·변경)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개조, 형상변경 또는 성능·기능·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유지관리)

① “을”은 기본약정기간 및 연장약정기간 동안 태양광발전설비의 성능 유지 및 관리·하자보수·부품교환 등 유지관리의무를 “을”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갑”이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기본약정기간 및 연장약정기간 동안 “갑”이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체계에 대한 보험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0조의2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

① 본 계약기간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을”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② 약정기간의 종료 후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 가능하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갑”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을”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을”의 비용으로 철거·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인수)

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갑”은 제3자에게, “을”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을”, 새로운 계약인수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갑”또는 “을”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제3자 또는 다른 사업자는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③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시키지 못할 경우 “갑”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하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지연손해금)

“갑”이 대여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한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OO)%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최초 계약이후 연장은 장소제공자(소비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쌍방이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설치 목적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완료 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갑”은 잔여계약기간 대여료의 (OO)%를 “을”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 혹은 회수할 수 있으며, “갑”은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상기 제 10조 ④항 및 ⑤항은 참고 제시안이며, 실 계약시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발생이나 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특약사항)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특수조건을 삽입할 수 있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상호 1부씩을 보관한다.

※ 본 표준계약서는 대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용임을 밝힘

[첨부 4]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고서

태양광발전 설비 변경 신고서

소유주	대여사업자명			
	이동전화			
변경전 소비자	성명		서명	
	이동전화		고유번호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년)
변경후 소비자	소유주		서명	
	이동전화		고유번호	(신고후 자동생성됨)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년)
설비 내역	□태양광 kW		설치종별	□ 주택 □ 건물 □ 공동주택
	최조설치일	년 월 일	사용전 검검일	
	이전 설치일	년 월 일	사용전 검검일	
사유	□양도 □ 장소변경 □명의변경 □ 매매 □ 기타			
기타의 경우	(주요내용 서술)			
최조 대여료	(원)/ 월	발전량보증제	□ 시행 □미시행	
변경후 대여료	(원)/ 월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 설비의 처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 ·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 5] 폐기·중지 신고서

태양광발전 설비 변경 신고서

소유주	대여사업자명			
	이동전화			
소비자	성명		서명	
	이동전화		고유번호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년)
설비 내역	□태양광 kW		설치종별	□ 주택 □ 건물 □ 공동주택
	최조설치일	년 월 일	사용전 검검일	
사유	□중지 □ 폐기 □ 기타			
기타의 경우	(주요내용 서술)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 설비의 처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 ·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 6] 설치확인서

년 태양광 대여 사업 설치확인보고서

대여사업자명			연락처	
신청자	신청자(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이메일	
	휴대폰		전기종별	
	주소(실거주지)			
설치장소(주소)				
설치종별	□ 주택 □ 공동주택		설치용량(kW)	W x 개 = kW
준공연월일			사용전 전검 필증 연월일	
대여사업자 관리번호			발전량	(개월) kWh
모듈 인증번호			모듈 모델명	
인버터 인증번호			인버터모델명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약정대여료(월)	
설치 특이사항	□ 부착형설치 □ 브릿지형 설치 □ 지붕외 설치			
설치사진	설비전경 (전체)		모듈·인버터 인증번호 사진	
	(설비 전체 확인)		(모듈 인증번호 확인)	
			(인버터 인증번호 확인)	

* 첨부서류: 제출목록(excel,발전량데이터포함), 전기사용량확인서, 소비자등기부등본(건물등기)

신청자(소비자) :_____ (서명)

대여사업자 대표 :_____ (직인)

확인자 :_____ (서명)

* 대여사업자는 대표(직인), 확인자(대여사업자의 설치담당 또는 설치완료 확인자)

[별첨 7] 태양광 대여사업 발전설비 명판(예시)

20 년 태양광 대여사업 명판

대여사업자명	
담당자명	
대표전화	
연락처	
홈페이지	
설치년월	년 월 일
설치용량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 본 설비는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입니다 A/S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 가로 10cm × 세로 10cm

○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대여사업자가 자체 제작하여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대여사업자의 필요사항에 따라 내용은 변경가능**

[첨부 8] 연대보증서(예시)

연 대 보 증 서

주 소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대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귀관이 추진하는 대여사업과 관련하는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업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 및 행정업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2. 본건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___년 ___월 ___일

연대보증인 주소 :

회 사 명 : ㊞

법인등록번호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귀중

※ 보증인 자필서명 및 연대보증용 인감증명 첨부 확인함.

수취및확인자	부 서		성 명		㊞

[첨부 9] BPM을 통한 태양광대여사업 신청방법

1. http://nrbpm.kemco.or.kr 로 접속합니다



2. 참여제안신청 클릭 후 법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3. 신규신청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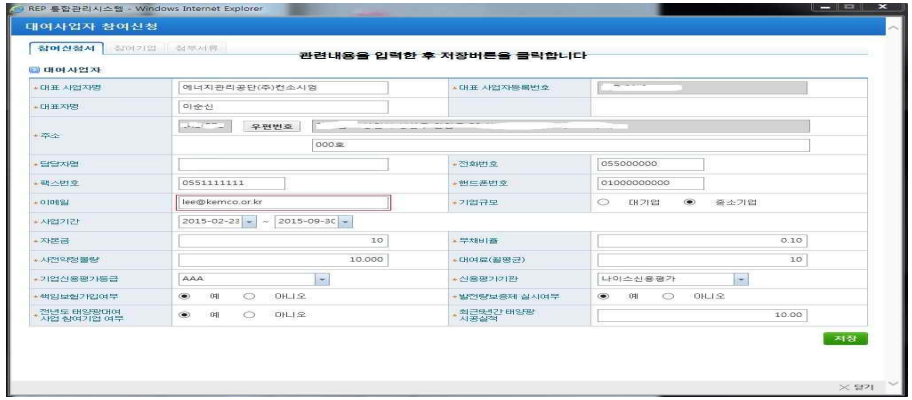
4. 신규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팝업처리되고 해당내용을 입력합니다



5. 우편번호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해당사항을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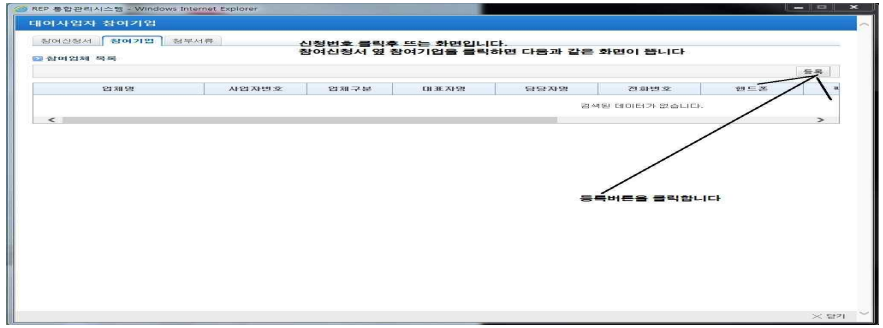
6. 관련내용을 입력한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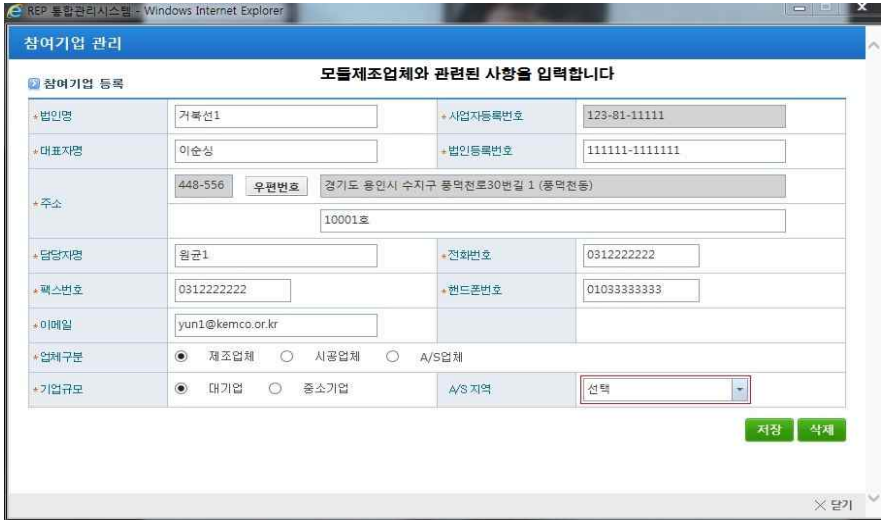
7. 참여기업 관련내용을 모두 저장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신청번호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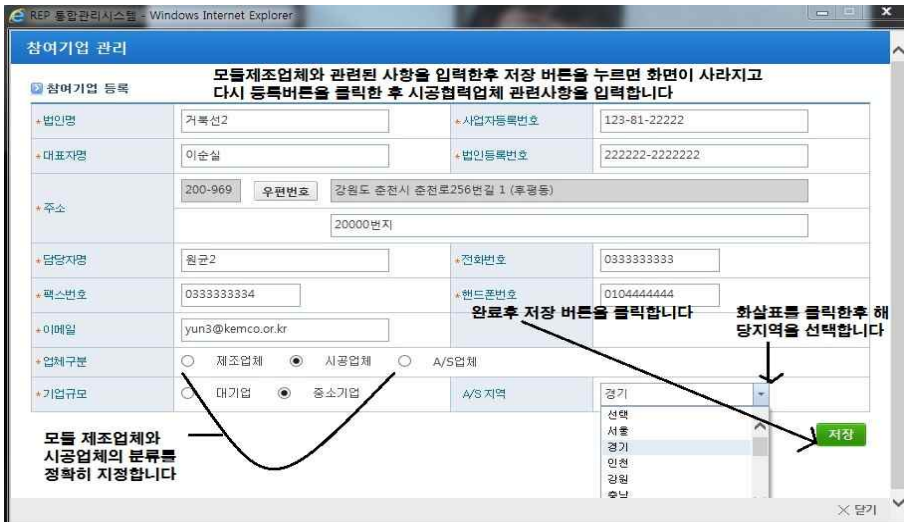
8. 참여기업으로 이동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9. 모듈제조업체의 해당 사항을 입력후 업체구분을 “제조업체”로 클릭하시고 A/S지역은 입력하지 않고 저장합니다



10. 시공협력업체와 관련된 사항을 제조업체 등록방법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단, 시공협력업체별로 각각 입력하여야합니다



11. 모듈제조업체와 시공협력업체 저장이 완료되면 옆의 첨부서류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할 첨부서류를 모두입력후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최종 제출 화면입니다.



① 대여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신용평가등급) 및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은 한파일로 등록

* 연대보증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뒷면에 첨부

** 대여사업자 경력 확인은 대여사업 협약서를 신용평가등급 뒷면에 첨부

② 그 외 기타첨부서류에 등록